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8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김성원・임이자・박성훈

김선교 • 고동진 • 이인선

이종배 • 박충권 • 김정재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해서만"을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	주체 및 대상) ①		
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이 아닌 <u>사람에 대해서만</u> 고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수 있다. <u><단서 신설></u>	법인으로부터		
	<u>다만, 법인으로부터</u>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만		
	<u>해당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